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심 사 보 고

1999. 11. 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1999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167회 충청북도의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 11. 3)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차 주 영)

가. 제안이유

- 오랫동안 현안사항으로 대두 되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 계획이 중앙정부 방침에 의하여 금년내에 시행하게 됨에 따라
- 그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 되었던 증평출장소 도안지소에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신규로 증원하고

- 법령개정(대통령령)으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한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80명에서 2,281명으로 조정하고
 -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7명에서 1,368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그 외의 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음.
-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매년 7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종 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증평출장소 도안지소에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책정 지방공무원 수를 1명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을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된 1,368명으로 개정함으로써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820명과 지방공립 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2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1명이 증원된 2,281명으로 개정하여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 업무를 전문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한 후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280명”을 “2,281”명으로, 같은조 제1호중 “1,367명”을 “1,368명”으로 한다.

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중 [표 1]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정원의 총수를 “2,409명”에서 “2,41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492명”에서 “1,493명”으로 하고, [표 2]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정원의 총수를 “2,359명”에서 “2,36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443명”에서 “1,444명”으로 한다.

제4조중 “7월 31일 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 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280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원의 총수)..... <u>2,281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67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68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부 칙('99. 9. 7 조례 제2516호)	부 칙('99. 9. 7 조례 제2516호)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표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의 총수 : <u>2,409명</u>	[표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의 총수 : <u>2,410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92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93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표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의 총수 : <u>2,359명</u></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43명</u></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제3조 (생략)</p> <p>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u>7월 31일까지</u> 정한다.</p>	<p>[표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의 총수 : <u>2,360명</u></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44명</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p> <p>.....</p> <p>.....</p> <p>.....</p> <p>.....<u>6월 30일</u>.....</p>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부칙 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매년 6월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하되,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